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10.6.30>

(앞쪽)

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① 상호(사업장명칭)		② 사업자등록 번호	
	③ 성 명(대 표 자)		④ 생년월일	
	⑤ 주 소	(전화:)		
⑥ 사 업 장 소 재 지		(전화:)		
⑦ 검 사 항 목		□ 배기소음 □ 경적소음		
⑧ 기술인력 확보현황				
⑨ 검사시설 확보현황				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 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수 수 료
	1. 기술능력·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.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	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2. 사업자등록증(개인)(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본 제출)	없 음

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※ 작성 요령

· ⑧란 및 ⑨란은 확보 여부를 적고,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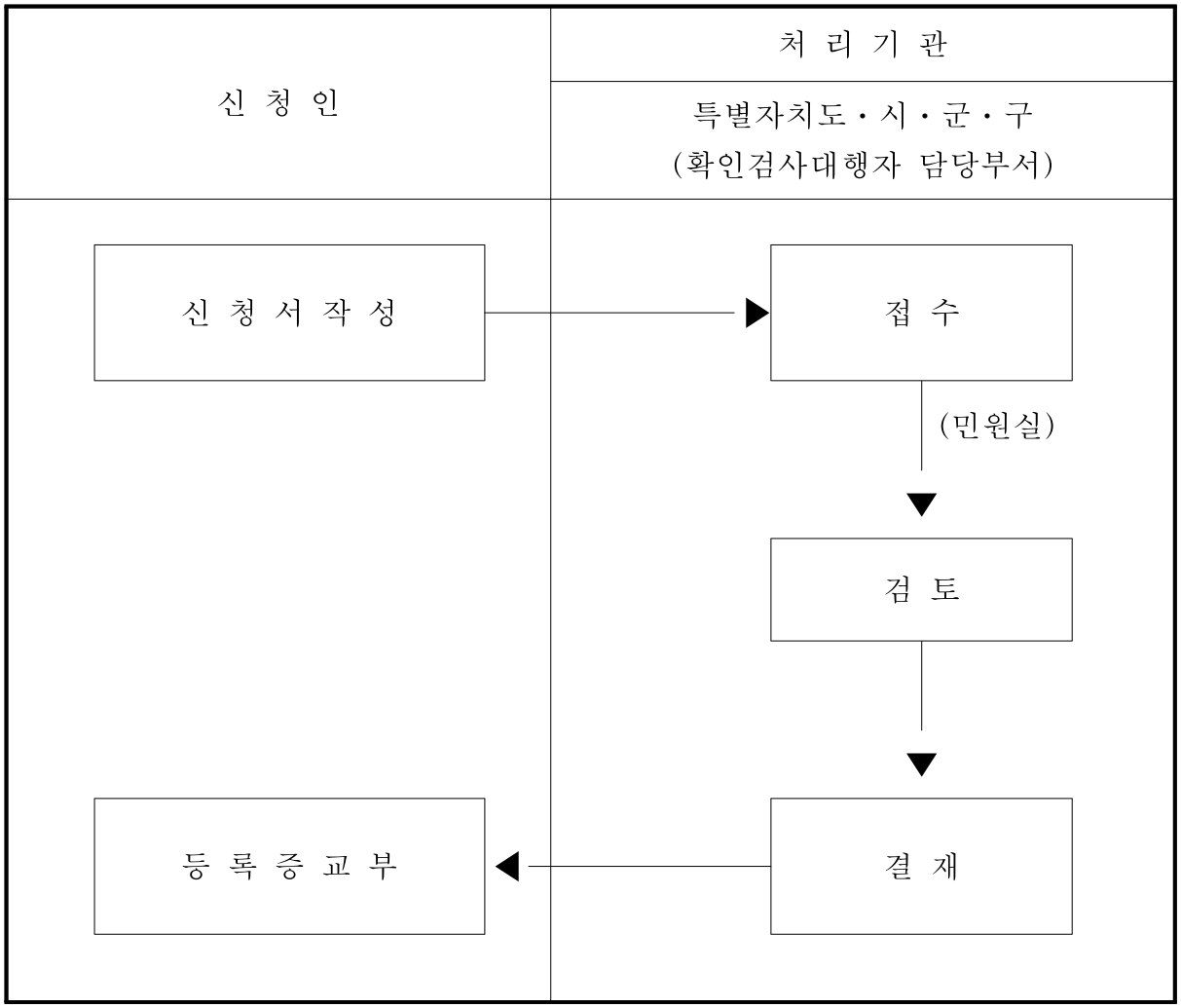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